

【일련번호: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신분)훈계 · 주의처분 / (행정)시정요구

제 목 ■마을안길정비공사 등 2건의 설계 부적정 및 정산 소홀
소 관 기 관 ○○면
조 치 기 관 ○○면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면에서는 □리 ■마을과 ▨리 ■마을 지내 도로 미정비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2017. 3. 7. (주)△△ 대표 E와 11,097천원에 「■마을안길 정비 공사」를, 11,178천원에 「군도2호선(▪지구) 도로정비공사」를 각각 계약 체결하고 2017. 3. 10. 착공하여 2017. 3. 24. 준공하였음.

공사명	위치	사업량	공사비(천원)			공사기간	도급자
			계	도급액	관급액		
■마을안길정비 공사	○○면 □리	○○ 아스콘덧씌우기 L=458m, A=22.75a	26,397	11,097	15,300	2017. 3.10. ~ 2017. 3.24.	(주)△△ 대표 E
군도2호선 (▪지구) 도로정비공사	○○면 ▪리	○○ 아스콘덧씌우기 L=550m, A=22.46a	27,658	11,178	16,480	2017. 3.10. ~ 2017. 3.24.	(주)△△ 대표 E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의 기초가 되는 설계서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며,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과 예산 절감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 적정한 예정가격이 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회계 예규 5절3관에 따르면 직접노무비는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환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이며 재료비와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경비로서 규정하고 있다.

「교통노면 표시 설치 · 관리 매뉴얼」(2012.12.경찰청) 제2장 제4절 및 제5절에 따르면 노면 표시용 도료는 제1종부터 제5종까지 5종류 가운데 KS M6080에 따라 재귀반사성능이 요구되는 수용성 노면표지용 도료(제2종), 융착식 노면표지용 도료(4종), 상온 경화형 플라스틱 도료(제5종) 3가지 종류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통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능성 유리알(비드) 및 첨가제를 혼합하여 도료의 내구성, 재귀반사성능, 야간 및 우천(습윤) 시 시인성을 향상시킨 차선표시 조성물을 설치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면에서 2017. 3. 10. (주)△△ 대표 E와 11,097천원에 계약 체결한 「■ 마을안길정비공사」(이하 “①”이라고 한다), 같은 날 같은 계약상대자와 11,178천원에 계약 체결한 「군도2호선(■지구) 도로정비공사」(이하 “②”이라고 한다)의 경우,

설계 내역서를 작성하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종과 무관한 도로 토공용 장비 모터그레이더를 중기운반에 반영하여 계상하였으며,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공종에 ①의 경우 2인(1일), ②의 경우 2인(1일)의 노무비를 계상하면서, 공사 구간내 이동차량과 보행자 통제를 위하여 시 · 종점에 배치하는 근로자는 목적물 형성에 직접 참여하는 직 · 간접노무자가 아니므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노무비가 아닌 경비항목에 계상하여야 하나, 노무비에 반영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등 부적정하게 설계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①과 ②에서는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공사를 설계하면서 도로차선의 재귀반사성능 향상을 위하여 우천 시에도 시인성 확보가 쉬운 비드(유리알)를 고휘도(1호)와 우천형 유리알을 혼합하여 살포하도록 단가산출서 [공사비 단가: 9,636 원/m²]를 작성하였으나, 현장은 협소한 도로에 아스콘을 재포장하는 공사로서 일교통량과 운행 차량들의 속도, 도로의 등급 등 현지 여건을 고려할 경우, 고가인 기능성 유리알 (습윤형 유리알 : 32,000원/kg)이 불필요하므로 설계단가를 재산정한 바에 따르면, 9,636원/m²이 아닌 4,494원/m²의 설계단가가 적정함에도 현장여건 및 안전시설 요구 성능 등 면밀한 조사 · 검토 없이 재료비가 고가인

습윤·우천형 유리알을 반영하여 ①에서는 1,052천원, ②에서는 1,206천원의 공사비를 과다설계 하는 등 예정가격작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①과 ②는 2017년 ○○면 종합감사(2017. 3.14. ~ 2017. 3.16) 실시 전 계약하여 착공(2017. 3.10.)한 사업으로,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 준공 전 정산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분 사항

실무담당자로서 설계 부적정 및 감사결과 이행을 소홀히 한 ○○면 C(현 ●●과)에게 신분상 ‘훈계’ 처분, 실무책임자 L(현 ○○과)에게는 신분상 ‘주의’ 처분함.

조치할 사항 ○○면장은

불필요 중기운반 비용 계산, 교통신호수 노무비 적용, 유리알 살포 단가 부적정 적용 등에 대하여 정산 없이 부적정 지급한 ①의 공사비 1,052천원, ②의 공사비 1,206천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상 시정)

【일련번호: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신분)주의처분 / (행정)시정요구

제 목 ▣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준공 전 정산 업무 소홀
소 관 기 관 ○○면
조 치 기 관 ○○면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면에서는 ▣리 ▣마을 지내 도로 협소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2018. 5.10. (주)▲ 대표 B와 24,716천원에 「▣마을 도로 확포장공사」를 계약 체결하고, 2018. 6.22. 물량증가 및 공종변경 등으로 정산 변경하여 2018. 6.27. 준공하였음.

공사명	위치	사업량	공사비(천원)			공사기간	도급자
			계	도급액	관급액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면 ▣리	○○ 도로확포장 L=110m, B=3.0m	32,600	27,530	5,070	2018. 5.16. ~ 2018. 6.27.	(주)▲ 대표 B

2. 관계법령(판단기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7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59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사감독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공사관리관은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와 현장조건과의 부합여부, 설계도면 · 시방서 · 산출내역 등의 상호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묻거나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의 비교·검토 등을 통해 예산절감이 가능하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당해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그 밖에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하는 등 감독업무를 성실히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면에서 2018. 4. 10. (주)▲ 대표 B와 24,716천원에 계약 체결한 「읍마을 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설계 내역서를 작성하면서 공사현장이 소규모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도로공사 시에 적용하는 토공장비를 적용하는 등 공사현장의 상태와 다르게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사업 시행하여, 구조물공의 전석쌓기($47,670$ 원/ m^2 → $39,771$ 원/ m^2), 뒤채움잡석부설($8,527$ 원/ m^2 → $4,826$ 원/ m^2) 공종의 설계단가는 현장 여건 반영하여 정산변경 조치하였다.

그러나 흙쌓기(노상, 노체, 비다짐)는 되메우기(다짐)으로,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은 기계식에서 소규모 인력식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불필요한 대형장비(모터그레이더 등 3종) 운반비용을 정산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공사 대금 27,530천원을 지급하여 701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 사항

실무담당자로서 준공 전 정산 업무를 소홀히 한 ○○면 A(현 □과)에게 신분상
‘주의’ 처분함.

조치할 사항 ○○면장은

설계도서와 현장 조건과의 부합여부 확인 과정에서 일부 정산 없이 지급한 공
사비 701천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상
시정)

【일련번호: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신분)주의처분 / (행정)주의요구

제 목 민원처리기한 경과
소 관 기 관 ○○면
조 치 기 관 ○○면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연번	접수번호	민원명	접수일	처리기한	처리일자	지연일수	담당자
1	'*****5420 039000080 3	장애인등록증재교부	20170719	20170816	20170818	-2	I
2	'*****5420 039000100 6	장애인등록	20170926	20171114	20171201	-13	I
3	'*****5420 039000101 3	장애인등록	20170928	20171116	20171120	-2	I
4	'*****5420 039000101 9	장애인등록증재교부	20171012	20171108	20171201	-17	I
5	'*****5420 039000008 4	장애인등록증재교부	20180131	20180302	20180306	-2	I
6	'*****5420 039000015 4	장애인등록	20180302	20180412	20180417	-3	I
7	'*****5420 039000031 9	장애인등록증재교부	20180416	20180514	20180517	-3	I
8	'*****5420 039000032 5	장애인등록증재교부	20180417	20180515	20180517	-2	I
9	'*****5420 039000039 4	개장신고	20180523	20180525	20180605	-8	I
10	'*****5420 039000040 0	장애인등록	20180524	20180706	20180711	-3	I
11	'*****5420 039000061 1	장애인등록증재교부	20180912	20181016	20181029	-9	I
12	'*****5420 039000061 2	장애인등록	20180914	20181101	20181106	-3	I

2. 관계법령(판단기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정해진 처리기한까지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7조에서는 민원 종류별 처리기간을 정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정 기간내에 민원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는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시행령 제22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제1항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하고 제2항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민원 처리와 관련있는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럼에도 ○○면 I은 2017.7.19. 접수된 접수번호 ****54200390000803

(장애인등록증재교부) 민원 외 11건을 처리하면서 처리기한을 2~17일 경과하여 신청인에게 회신하여 처리 기한을 연장하지도 않고 지연 처리하였으며,

○○면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처분 사항

실무담당자로서 민원처리를 소홀히 한 ○○면 I에게 신분상 ‘주의’ 처분함.

조치할 사항 ○○면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상 주의)

【일련번호: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신분)주의처분 / (행정)주의요구

제 목 ○○지급 업무 소홀(불필요한 서류 징구)

소 관 기 관 ○○면

조 치 기 관 ○○면

내 용

1. 현황(불필요 서류 징구 내역)

공사명	지급금액 (천원)	지급일	지급명령 지출번호	계약상대자	비고
▶마을 안길정비공사	19,380	2018.11.28.	126	(주)◀◀ F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징구
▷세천 개보수공사 관급자재(레미콘)	1,410	2018.11.30.	130	◁◁(주) G	"
▼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15,762	2018.12.17.	145	(유)◆◆ H	"

※ ○○면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제18조 및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검사를 완료한 후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를 지급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5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6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제3절의 규정의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경우 체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의 따라 지방세외수입금

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재무과-31177(2016.10.11.), 재무과-1108(2017.1.11.), 재무과-819(2018.1.9.)호와 관련하여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공사대금 및 보상금 등 지급시 부서별 지출담당자는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세외수입 등의 체납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을 지급하도록 3차례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직접 이를 확인·처리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금지하고 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28조에 따라 이용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공동이용함에 있어서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면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받을 경우에는 담당자가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완납여부를 직접 확인·처리하여야 함에도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중복으로 제출 받아 대가를 지급하는 등 계약상대자로부터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한 사실이 있다.

처분 사항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여 대가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행정7급 D에게 신분상 ‘주의’ 처분함.

조치할 사항 ○○면장은

직원교육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상 주의)